13.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8-571호 1998. 12. 3

개 정 이 유

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은 사업이 완료되고 청산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인가나 채권자의 동의절차 없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, 법 제79조 삭제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

주 요 골 자

가.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인가규정 삭제

나. 시행자변동시 신고기간 및 첨부서류

주택회보

13.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8-572호 1998. 12. 3

개 정 이 유

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사실을 시행자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인가시 공고를 하므로 별도로 그 사실을 통지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

주 요 골 자

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내용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는 의무 삭제